

대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23모465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피 고 인 피고인
재 항 고 인 검사
원 심 결 정 부산고등법원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별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죄 또는 공직선거법이 준용되는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

하다. 따라서 교육자치법 제49조 제1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고 있더라도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죄가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결정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육자치법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을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12.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